

##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의 서면 신청에 대하여

고등학교 등의 수업료 지원 제도 개정으로 소득 제한이 폐지되어, 많은 분들이 수업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고등학교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신청이 필요합니다.

이 안내에 따라, 월 일까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.

### ◆ 제도의 상세

◆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으면 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
◆ 대상 학생

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이며,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, ① 또는 ②~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※

①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

<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,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(해당 예시는 P3 참고)>

②특별영주자

③영주자, 일본인의 배우자 등, 영주자의 배우자 등

④정주자 (향후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)

⑤가족체재 (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하고,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뒤  
일본에서 취업해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)

※ 전적교(前籍校: 이전 재적 학교)가 있고,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누적하여 36 개월(정시제, 통신제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48 개월)을 초과하는 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◆ 지급을 받으려면

재학 중인 학교 사무실에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을 신청해 주십시오.

### ◆ 신청 방법

양식 1 의 1 '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'(취학지원금 인정을 받은 재학생은 양식 1 의 2 '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확인 신청서')에 다음 서류를 첨부(붙이는 대지에 폴로 붙여)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.

◆ 필요 서류(학생의 이하 중 하나의 서류. 일본 국적인 경우는 첨부 불필요)

☐주민표 사본 (원본)

☐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(복사)

☐재류카드 사본(복사)

☐가족체재는 함께 제출)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

## ◆ 절차 흐름

2026 년 4 월 ~  
2027 년 3 월 분

### 【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】

- 1 고등학교등취학지원금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  
(취학지원금 인정을 받은 재학생은 수급 자격 확인 신청서)
- 2 재류카드 등의 사본을 붙이는 대지  
(학생의 이하 서류 중 하나를 첨부. 일본 국적인 경우는 제출할 필요 없음)  
☐ 주민표 사본(원본)  
☐ 특별영주자증명서 사본(복사)  
☐ 재류카드 사본(복사)

(가족제재는 이하 서류도 함께 제출)

- ☐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

### 취학지원금 심사

【신입생·재학생】  
P1 「대상  
학생」에 해당하는  
경우

【재학생】  
P1 「대상 학생」에  
해당하지 않지만, 연  
수입이 약 910 만엔  
미만인 세대인 경우

【재학생】  
P1 「대상 학생」에  
해당하지 않지만, 연  
수입이 약 910 만엔  
이상인 세대인 경우

【신입생】  
P1 「대상  
학생」에 해당  
하지 않는 경우

### 취학지원금 지급

실제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,  
학교에서 수업료 채권에 충당함으로써,  
수업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.

### 취학지원금 지급 안 함※

심사결과통지 [ 우편  ]

※ ‘대상 학생’에 해당하지 않아 취학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, 수입 요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제도(신수학지원금 新修学支援金)가 있습니다.

## ◆ 국적·재류 자격에 관한 요건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참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       | 일본인, 일본으로 귀화한 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특별영주자                   | 특별영주자로 일본에 재류하는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영주자 등                   | 영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사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본인 배우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본인의 배우자, 자녀, 특별양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년, 3년, 1년 또는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주자 배우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영주자·특별 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해 계속 재류하고 있는 자녀        | 5년, 3년, 1년 또는 6개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④정주자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대신이 특별한 사유를 고려해 일정 재류기간을 지정하여 거주를 허용하는 사람(제3국 정주 난민, 일계 3세, 중국 잔류 일본인 등) | 5년, 3년, 1년 또는 6개월,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한 기간(5년 이내) | 정주자 중 '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'은 지급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●신제도 대상이 아닌 재학생(유학생 포함)에게는 기존 제도의 지원을 계속.</p> <p>●신제도 대상이 아닌 신입생(유학생 제외)에게는 기존 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예산 조치를 실시.</p> |
| ⑤가족체제                    | 교수, 예술 등의 재류 자격을 가지고 재류하는 사람의 부양을 받는 자녀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무대신이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기간(5년 이내)                      | 가족체제 중 “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하고,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뒤 일본에서 취업해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”은 지급 대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⑥오른쪽에 명시된 재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 | · 외교, 공용<br>· 문화 활동<br>· 유학, 연수<br>· 특정 활동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구분 내용에 따라 15일부터 5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급 대상 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재류자격의 취득·변경·갱신은 모두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.

## ◆ 신수학지원금(新修学支援金)、취학지원금(경과 조치)에 대하여

P1에 기재된 ‘대상 학생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보호자 등의 소득을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에 따라 대상이 되는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.

**【계산식】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 × 6% -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**

※ 정령지정도시인 경우에는 ‘조정공제액’에 3/4를 곱해 계산

※ 취학지원금을 받으려는 학생이 빠른년생인 경우, 부양공제 적용이 다른 동년배 학생보다 1년 늦어지는 경우(2026년 7월~2027년 6월분은 2010년 1월 2일~4월 1일에 태어난 학생이 대상)에는 보호자 등의 과세표준액에서 33만 엔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 기준액을 계산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| 연수입 약 910만엔 미만인 세대 | 연수입 약 910만엔 이상인 세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신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학생(유학생 포함) | 취학지원금(경과 조치)을 지급   | 신수학지원금(新修学支援金)을 지급 |
| 신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입생(유학생 제외) | 신수학지원금(新修学支援金)을 지급 |                    |

※ 연수입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는 금액이며, 공제액 등에 따라 910만 엔을 초과하더라도 인정(대상)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### ◆ 신청 방법

취학지원금 심사 시 수입 상황 신고가 필요한 학생과 취학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학생에게는 추후 안내 등을 배포하니, 제출 기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.

## ◆ 자주 하는 질문



Q 소득 제한이 없어졌는데도 신청이 필요한가?

A 소득 제한은 폐지되었지만, 새로 국적 및 재류자격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.



## ◆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.

- ◇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
- ◇ 국적 또는 재류자격의 변경, 재류기간의 갱신 등이 있는 경우  
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.

## ◆ 참고

①취학지원금 온라인  
신청 시스템  
e-Shien



신청은 여기에서

②문부과학성 HP



리플렛  
제도 개요 등

③가나가와현교육위원회 HP



수시 안내 등

문의처 가나가와현립

학교 사무실 전화

- -